

행정사실무법(제4회) 유사문제

1.

<진도별 모의고사 7/10>

1. 행정심판법상의 임시처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1. 임시처분

1. 의의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가 발하는 가구체 수단을 말한다.

2. 임시처분의 요건

- ① 심판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③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임시처분의 절차

- ①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임시처분의 취소

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시처분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집행정지와의 관계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실전 모의고사 09.25.>

3. 비송사건의 재판의 종류 및 고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3. 재판의 종류 및 고지

1. 서설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재판의 형식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재판서에는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여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유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3. 재판의 종류

(1) 본안 전의 재판

본안 전의 재판이란 신청요건을 결여하였거나 보정을 명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2) 본안의 재판

본안의 재판이란 절차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여 그 결과 이유가 있다고 하여 사건이 목적하는 적극적 재판을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소극적 재판을 하는 경우의 재판을 말한다.

4. 재판의 고지

(1) 고지의 방법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은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지방식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2) 고지의 상대방

- ① 재판의 고지는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한다.
- ② 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실전 모의고사 09.10.>

3. 비송사건의 대리 및 선정당사자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문제3. 대리 및 선정당사자

1. 서설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 비송사건의 대리

(1) 비송대리인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자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비송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때에는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증명

① 비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통상 위임장에 의하여 증명한다.

② 대리권의 증명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비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4) 대리행위의 효력

① 비송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② 비송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한 자가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비송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재판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3. 선정당사자

- ① 선정당사자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② 비송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4.

<실전 모의고사 08.27.>

2. 행정사의 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2. 행정사의 의무

1. 서설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사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사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일반의무

- ①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 ⑥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⑧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⑨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거나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3. 금지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 ②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는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④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